

의안번호	2118294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2. 2.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294)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8조제1항)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 2063년부터 2072년까지 총 3조 4,805억원, 연평균 3,481억원(2023년 불변가격 기준)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685	1,348	2,010	2,655	3,248	34,805	3,481
	2068	2069	2070	2071	2072		
	3,823	4,402	4,966	5,537	6,131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반영되는 2063년부터 2072년의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3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2.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8조제1항)	4
3. 추계 결과	5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2021년 불변가격 기준(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함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추가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3년 685억원, 2072년 6,131억원 등 2063년부터 2072년까지 3조 4,805억원(연평균 3,48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685	1,348	2,010	2,655	3,248	34,805	3,481
	2068	2069	2070	2071	2072		
	3,823	4,402	4,966	5,537	6,131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2063년부터 2072년의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8조제1항)
-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¹⁾(이하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을 산입
 -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
 - 현행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가리킴

Ⅲ. 비용추계의 전제

□ 군복무크레딧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계산

□ 군복무크레딧²⁾ 대상자에 대한 가정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군 입대 비율) 2021년 기준 19세 병역판정검사 합격률 94.12% 적용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021년 기준 20~29세 군복무 중인 인원 대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의 비율인 73.77% 적용
 -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³⁾,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자와 2021년에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함(단, 군인연금의 가입대상인 장기복무자 제외)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에 연도별·연령별 가입률, 종별이동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연금수급권자 수를 산출
 - － 연금수급권자 중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률을 적용하여 해당자 수를 산출

□ 군복무크레딧 적용을 위한 노령연금액 산정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군복무크레딧 적용자는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 산출 시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추가연금액이 산정됨
 - － 현행법에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추가연금액 산출 시 기준연금액의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

2) 본 추계서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해 ‘군복무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65세이나,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5세 전부터 수급이 가능하므로, 60세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10년간으로 함
 -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정의 대상자는 2024년부터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가정
 - 2024년 21세(평균 입대 연령)인 가입자는 2063년 60세에 도달하므로 추계기간은 2063년에서 2072년으로 함
- 추계기간이 장기이고 연금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므로 202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본 비용추계의 대상은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로,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적용되는 대상자 수에 개정안에 따른 기간(12개월)을 산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에서 현행 규정 기간(6개월)을 산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_t =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_t -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_t

총재정소요_t = 대상자 수_{i,t}¹⁾ × 추가 산입 기간에 대한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_{i,t}²⁾

이 때, *i*는 연금유형(1=조기노령연금, 2=노령연금), *t*는 군복무크레딧 적용자의 수급 연도

1) 군복무크레딧을 적용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1세 인구추계 결과에 병역판정검사 합격률, 대상자 비율을 적용한 후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각 연도별 대상자 수를 산출

- a) 병역판정검사 합격률은 2021년 기준 19세 병역판정검사 현황 중 실시 인원 대비 합격률을 적용하고, 크레딧 대상자 비율은 2021년 기준 20~29세 군복무 인원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인 현역병,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의 비율 적용
- b)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에 연도별·연령별 가입률, 중별이동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연금수급권자 수를 산출

2) 추가 산입 기간에 대한 1인당 평균 기본연금액

추가 산입 기간에 대한 1인당 평균 기본연금액 = $Y \times (A + A' \times 0.5) \times (\text{추가 산입 기간}) / D \times \delta$

이 때, Y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소득대체율 상수, A는 연금급여액 결정 시점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는 군복무크레딧 기간 중 법 제51조에서 인정하는 소득, D는 국민연금 가입기간(240개월 적용), δ 는 조기노령연금액 비율

- a)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되, 조기노령연금액 비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60세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적용하고, 이후 1세마다 6%씩 증가하여 노령연금 개시 시점에 기본연금액의 100% 적용
- b) 추계기간 동안 연금급여액은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급여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국민연금법」에 따라 *t*-1년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c) A값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을 적용
- d) 추가 산입기간
(현 행) 6개월
(개정안) 12개월

2.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안 제18조제1항)

- (현행 제도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재정소요) 현행 제도 유지 시 군복무크레딧에 대한 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3년 1조 244억원, 2072년 1조 4,311억원 등 2063년부터 2072년까지 10년간 12조 4,693억원(연평균 1조 2,469억원)

[표 2] 현행 제도 유지 시 군복무크레딧 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10,244	10,824	11,390	11,925	12,390	124,693	12,469
	2068	2069	2070	2071	2072		
	12,818	13,229	13,603	13,959	14,311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2063년부터 2072년의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에 대한 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3년 1조 928억원, 2072년 2조 442억원 등 2063년부터 2072년까지 10년간 15조 9,499억원(연평균 1조 5,950억원)

[표 3]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10,928	12,172	13,400	14,580	15,638	159,499	15,950
	2068	2069	2070	2071	2072		
	16,641	17,631	18,570	19,496	20,442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2063년부터 2072년의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추가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3년 685억원, 2072년 6,131억원 등 2063년부터 2072년까지 3조 4,805억원(연평균 3,481억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3~2072년

(단위: 억원)

	2063	2064	2065	2066	2067	합 계	연평균
군 복무기간에 대한	685	1,348	2,010	2,655	3,248	34,805	3,481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68	2069	2070	2071	2072		
(안 제18조제1항)	3,823	4,402	4,966	5,537	6,131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2063년부터 2072년의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연락처	02-6788-3738
	wrkim@nabo.go.kr
